

# 대구도시철도 운행시격, 시민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조정

평일 퇴근·귀가시간 변화에 맞춰 오후 혼잡시간대 40분~1시간 앞당겨  
10월 7일(월) 하양연장구간 영업시운전 열차부터 적용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0월 7일(월)부터 하양연장구간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열차운행 시격도 조정 시행한다.

먼저 도시철도 1·2·3호선 열차 승객이 가장 붐비는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를 1·2호선은 약 1시간, 3호선은 40분을 앞당겨 운행한다.

혼잡시간대 (RH: Rush Hour)는 하루 중 도시철도 이용이 가장 많은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등 운행간격이 5분인 시간대를 말한다.

이번 열차운행 시격 조정은 도시철도 개통 27년 만에 처음 개편되는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귀가시간 등 생활 패턴 변화와 1호선 하양연장선 개통의 수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사는 그간의 수송주요 승객혼잡도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혼잡시간대를 평일 오후 실제로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조정함으로써, 열차 내 혼잡도가 완화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2·3호선 평일 오후 혼잡시간대 조정(1·2반월당역, 서문시장역 하행 기준)

구분	현행	조정	비고
1호선	18:32~19:47(1시간 15분)	17:31~18:46(1시간 15분)	60분 당김
2호선	17:55~19:20(1시간 25분)	16:58~18:23(1시간 25분)	
3호선	17:49~19:19(1시간 30분)	17:07~18:37(1시간 30분)	40분 당김

※ 1·2·3호선 휴일 열차운행 조정

구분	현행	조정	감축 횟수	비고
1호선	264회	248회	16회 감축	1·2·3호선 총 40회 감축
2호선	264회	248회	16회 감축	
3호선	288회	280회	8회 감축	

또한, 평일에 비해 도시철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휴일에 대해 승객이 한산한 시간대의

열차운행을 1호선 16회, 2호선 16회, 3호선 8회 총 40회 줄인다. 열차운행과 관련해 조정되

는 열차시각표는 역사 내 안내문,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대구교통공사>

**엄마와 단둥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엄마의 가족여행**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

CHANNEL J

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 케이블 57-1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0일(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월)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 053-803-6276, 6277,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4985로 문의.

###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분할)연금 수급금액이 502,210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고 이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본인 기여분 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민없이 1365